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”를 “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단서 중 “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”을 “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5항 중 “이사장”을 “임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법 제58조제7항”을 “법 제58조제8항”으로,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호 중 “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”을 “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문화체육센터(무학봉체육관, 손기정문화체육센터, 회현체육센터, 충무아트홀스포츠클럽센터)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”을 “문화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”으로 한다.

제25조 중 “제23조”를 “제24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	행	개	정	안
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.	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<b>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.</b>	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<b>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b>	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<b>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b>	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<b>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b>
제8조(임기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8조(임기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8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b>&lt;삭 제&gt;</b>	제8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b>&lt;삭 제&gt;</b>	제8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b>&lt;삭 제&gt;</b>
제10조(이사) ① (생략)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단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	제10조(이사) ① (생략)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단, <b>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b>	제10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단, <b>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b>	제10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단, <b>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b>	제10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단, <b>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b>
제2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 ①~④ (생략)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<b>이사장</b>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	제2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 ①~④ (생략)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<b>이사장</b>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	제2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<b>임원</b>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	제2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<b>임원</b>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	제2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<b>임원</b>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) ① 추천위원회는 법 <b>제58조제7항</b>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,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<b>행정안전부장관</b>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	<p>제22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) ----- -----<b>제58조제8항</b>----- ----- ----- ----- <b>행정자치부장관</b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4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</b>에 관한 사업</li> <li>2. <b>문화체육센터(무학봉체육관, 손기정문화체육센터, 회현동체육센터, 충무아트홀스포츠클럽센터) 관리 및 운영</b>에 관한 사업</li> <li>3.~4. (생략)</li> </ol>	<p>제24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</b>에 관한 사업</li> <li>2. <b>문화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</b>에 관한 사업</li> <li>3.~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<b>제23조</b>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<b>제24조</b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